


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발취

 (주) 후 성	자재구매	관련규정	FCC-A-5200
		개정번호	6
	외부공급자 관리 규정	개정일자	2018.05.30
		페이지	

5. 업무 절차

5.1 협력 업체의 선정 원칙

구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**외부공급자**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1) 재무구조 및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 유지가 가능한 업체
- 2) 경영자의 의식구조가 당사와의 거래에 적격하다고 판단된 업체
- 3)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기술 향상이 가능한 업체
- 4) 납기 및 가격이 적절한 업체

5.2 외부공급자 평가 방침

- 1) 평가 방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.
- 2) 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며, 평가 대상 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5.3 평가 자료의 배포

담당자는 평가가 필요한 업체에 당사의 평가 기준(평가표 또는 외부공급자관리카드)을 배포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업체에 요구한다.


5.4 평가

- 1) 담당자는 외부공급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.
- 2) 평가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충정보가 필요시 외부공급자에 추가정보의 요구하거나, 실시할 수 있다.
- 3)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외부공급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도 있다.

종 류	실시	불합격	대상업체	평가 항목	평가부서
신규 평가	최초거래	미등록	신규업체	일반평가	구매
정기 평가	- 1회/2년 - 중대결격사유업체	등록취소	등록업체	일반평가	구매
			원재료(제조사)	품질/환경평가	품질
서류 평가	-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서면 평가 (당사 평가 기준)				
실사 평가	- 구매와 관련부서가 함께 평가한다.				
면 제	신규평가	- 월거래 금액 500만원(년평균) 미만의 공급 업체 - 일반 자재, 소모품 또는 품질에 영향이 없는 물품 판매 업체			
	재평가	- 월거래 금액 500만원(년평균) 미만의 공급 업체 - 재평가 점수 90점이상 업체 차기 재평가 면제			
비 고	- 중대 결격 사유 : 업체의 부도 및 대표자 변경 등				

* 당사 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중 관련 내용 발취 자료입니다.

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발취

 (주) 후 성	자재구매	관련규정	FCC-A-5200
	외부공급자 관리 규정	개정번호	6
		개정일자	2018.05.30
		페이지	

5.5 외부공급자 평가 기준 및 등급

1) 평가 담당자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① 일반평가(구매팀)

평가 항목	일반현황	품질	납기	가격	조직관리	설비관리	생산관리	기타	경영자 의식
배 점	20	20	20	20	10	10	10	10	20
비 고	점수산정 방법 : 점수 = (총득점/총배점) × 100 협력업체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은 구매팀에서 정한다.								

② 안전 평가(안전팀)

평가 항목	안전 관리비	안전 관리자 선임	자체 안전 기준	안전 장비	안전 의식	교육 훈련	안전 관련 사항	계
배 점	20	10	10	20	10	20	10	100

③ 품질평가(품질팀)

평가 항목	품질조직	품질관리	공정관리	측정설비	구매/자재 관리	제품 관리	준서판 관리	무적입출판 관리	교육관리	물류	내보	판공	계
배 점	30	38	6	10	10	10	10	8	10	8	10	10	160
비 고	실사평가시 점수 50% 반영, 점수산정 방법 : 점수 = (총득점/총배점) × 100												

⑤ 평가 등급 산정


등급	A 등급	B 등급	C 등급	D 등급
점 수	90점 이상	89점 ~ 80점	79점 ~ 70점	70점 미만
비 고	공사 수행 만족도 평가가 실시된 경우 점수 산정방법 (일반 평가 점수 × 0.5) + (안전평가 점수 × 0.2) + (품질평가 점수 × 0.3)			

- 2) 구매 담당자는 평가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외부공급자에 결격 사유 및 시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시정토록 조치한다.
- 3) 구매 담당자는 통보한 시정일 경과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.
- 4) 상기 평가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평가항목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외부공급자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하여 업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* 당사 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중 관련 내용 발취 자료입니다.

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발취



 (주) 후 성	자재구매	관련규정	FCC-A-5200
	외부공급자 관리 규정	개정번호	6
		개정일자	2018.05.30
		페이지	

5.7 업체 등록 취소

구매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) 상기 5.5에 의해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
- 2) 업체의 부도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업체
- 3) 당사의 기밀 누설, 명예훼손 등과 같이 당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업체
- 4) 당사와의 거래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업체
- 5) 안전팀에서 실시한 도급업체 평가기준 미달인 업체
- 6) 기술팀에서 협력업체의 결격 사유로 인해 협력업체 등록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
- 7) 품질팀에서 실시한 품질시스템 평가 기준 미달 업체

* 당사 외부공급자 관리 규정 중 관련 내용 발취 자료입니다.

